

#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3,500,000	20,205,000
일반회계	573,100,000	17,193,000
특별회계	100,400,000	3,012,000
공기업특별회계	34,000,000	1,020,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000,000	540,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000,000	480,000
기타특별회계	66,400,000	1,992,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890,000	116,7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580,000	77,4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740,000	22,2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200,000	66,000
주택사업특별회계	790,000	23,700
치수사업특별회계	14,618,000	438,54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070,000	62,100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00	15,0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22,000	66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7,670,000	830,1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320,000	339,6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81,112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5,731,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50,112천원)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